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정과 관리를 통해 관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장비를 제작·수입 또는 설치하는 자가 그 관측 장비를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기상청장의 검정(檢定)을 받도록 하고, 기상청장은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6612호, 2019. 11. 26. 공포, 2020. 11. 27. 시행)됨에 따라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과 검정수수료를 정하고,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 <환경부 제공>

고 시

●국방부고시제2020-39호

국방·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

- 1. 관련근거 : 국방부고시 제2017-21호(관보 제19039호, 2017. 6. 28.) 국방·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, 국방부고시 제2019-13호(간보 제19527호, 2019. 6. 20.) 국방·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
- 2. 위 관련근거에 따라 고시된 국방·군사시설사업계획을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26일

국 방 부 장 관

- 1. 사업의 명칭 : 육군 0사단 구)캠프 그리브스 일부시설 이전사업
- 2. 사업의 개요
경기도의 캠프 그리브스 활용계획에 따른 육군 0사단 구)캠프 그리브스 일부시설 이전사업(기부 대양여)
- 3.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
경기도 과주시 군내면 백연리 227번지 등 75필지 / 259,361㎡
- 4. 사업의 시행기간
 - 기정 : 2017. 6. 28. ~ 2020. 12. 31.
 - 변경 : 2017. 6. 28. ~ 2021. 6. 30..
 - 사유 : 코로나19 확산, 장마 및 태풍 등으로 인한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연장
- 5.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
 - 명 칭 : 경기도지사
 - 주 소 :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(매산로3가, 경기도청)
 - 연 락 처 : 031-8030-2663
- 6.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(細目)
 - ※ 토지 세목은 국방부고시 제2017-21호 및 국방부고시 제2019-13호를 참고하시고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담당자(☎ 031-8030-2663)에게, 국방·군사시설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(☎ 02-748-5641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●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-199호

「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
「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」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-226호, 2018. 12. 13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26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평가기준일) ①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주해야 하는 사업의 업무여유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착수에 정일로 한다.

제3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3(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)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.

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을 활용하여 평가한 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서류의 원본을 제출받아 관련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.

제6조의 “2019”를 “2021”로 한다.

<별표>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※ 별표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(고시란)을 참조바랍니다.

●해양수산부고시제2020-189호
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「여수 웅천 마리나항만구역 지정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26일

해양수산부장관

여수 웅천 마리나항만구역 지정

1. 마리나항만구역의 명칭

○ 마리나항만의 명칭 : 여수 웅천

2. 마리나항만구역의 위치 및 면적

○ 위치 :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874~1875-3번지 전면해상 일원